

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19.6.20.)

규칙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 채 환]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5. 30.

나. 발 의 자 : 박수자, 이홍희, 김향란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

다. 회부일자 : 2019. 5. 31.

2. 개정이유

-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
-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규칙 제명 변경

- 1)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
→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

나. 목적, 적용범위, 허가권자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다. 심사위원회의 설치, 심사기준, 회의 (안 제4조 ~ 안 제6조)

1) 심사위원 구성

- 구성: 의원 및 민간위원(민간위원 비율 2/3 이상) 7명 이상
- 민간위원: 교육계, 법조계, 언론계, 시민사회단체 등
- 심사할 사항: 출장의 필요성, 출장자의 적합성, 출장국과 기관의 타당성,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경비의 적정성

2) 회 의
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

라. 수당 및 여비,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(안 제7조 ~ 안 제9조)

1) 공무국외출장 제한

-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
-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계획하는 경우
-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
-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

마.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
1) 출장계획서 제출: 출국 30일 전까지

2) 출장보고서 제출: 15일 이내 제출, 60일 이내 상임위 또는 본회의 보고

바. 예산 편성·집행, 사후관리 등 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
1) 기 간: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

2) 경 비: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

3) 사후관리: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자료 :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-456(2019.2.11.) 개정권고

나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19. 5. 28. ~ 6. 3.
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비대상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로
-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